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9월 30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⑨>

국회의원 특권 실상: 기타 분야1)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

그 동안 시리즈를 통해 분야별 국회의원 특권을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 편으로 기타 특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회의원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배우자나 자녀, 친척을 보좌진(인턴 2명 포함 시 9명)으로 채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15조)은 이미 사문화되었다.

국회의원 이외, 행정부의 경우,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4촌 이내의 친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원칙적으로 회피해야 한다(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기업인(최대주주)들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등(‘특수관계인’이라 함)과 회사와의 거래, 사외이사 선임 등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공정거래법, 법인세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 주요 선진국의 의회경우에는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거나, 채용할 경우 이들의 급여를 제한한다(【표 1】참고).

【표 1】 의원 보좌진 친·인척 채용에 관한 외국 의회 사례

	채용 금지·제한 범위
미 국	· 친인척 채용 금지 - 의원 본인의 배우자(하원 의사규칙) - 직계 존비속·4촌 이내의 혈족(미국연방법원, 모든 공무원)
일 본	· 본인의 배우자 채용 금지
영 국	·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중 1명은 채용 가능(2010년 정부개혁법 개정)
프랑스	· 상원 : 채용제한 없으나, 급여는 일반 보좌진의 1/2 초과 금지 · 하원 : 가족 2명 채용할 수 있으나, 급여는 일반보좌진의 1/3 초과 금지
독 일	· 친인척 채용 제한이 없으나, 배우자나 친척은 급여청구 불가능

※ 출처 : 국회운영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2012. 8)

1) 본 시리즈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그 실상과 혁파방안」을 시리즈로 재구성하였음.

국회의원은 전직의원 친목모임 육성법을 제정하고, 정부지원을 받는다. 전직의원들의 친목단체인 '헌정회'를 육성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 단체를 통하여 일부 전직의원들(19대부터 의원연금 수령 제외)에게 의원연금을 지원한다. 의원연금은 1988년부터 법적근거 없이 지급했으며, 1991년에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제정되었지만, 연금지급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지 않았다.

국회의원 이외의 경우,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전직 공무원친목단체를 지원하는 법률이나 예산은 없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행정동우회(전직공무원 모임)와 의정회(전현직 지방의원 모임)가 있으나, 이에 관한 법률은 없다. 또한 정부(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이들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들 단체를 지원하는 지자체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외국에도 전직의원들의 친목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없음

또한 국회의원은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도 월급과 수당 등 혜택을 다 누린다. 의원들은 개원일시 준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개최 일수, 국회의원의 의무 준수 등과 무관하게 급여,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이외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은 임무에 태만하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법관도 임무에 태만하면 법관징계법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끝/